

(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5면)

위반건축물 양성화 선제 대응해야



**▲최옥주 재정
복지위원장(방이
1동·송파1·2동)**
은 오는 12월
17일 시행되는
'특정건축물 정
리에 관한 특별
조치법'에 대비
해 송파구가 선

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설 것
을 촉구했다.

최 위원장은 "이번 특별조치법은 12월
17일부터 18개월간 시행되는 한시법으
로, 2023년 12월 31일 기준 사실상 완공된
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대상"이라
며 "법이 시행된 후 움직일 것이 아니라
입법예고 기간인 지금부터 선제 대응에
나서야 한다"고 강조했다.

최 위원장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

송파구의 위반건축물은 3021동(위반율
11.07%)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세
번째로 높으며, 서울 평균(6.59%)의 1.7배
에 달한다. 특히 방이동(425동), 송파동
(349동), 삼전동(330동)에 위반건축물이
집중되어 있다.

이에 최 위원장은 송파구에 △위반건축
물 현황 및 용도·완공 시기 등 실태 사전
파악 △건축사회 연계 전문 상담 및 원스
톱 지원센터(TF) 설치 △행정 자치망을
활용한 개별 안내·야간 및 주말 설명회
등 적극 홍보 △월별 추진 실적 관리 및
의회 보고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.

끝으로 최 위원장은 "12월 17일은 준비
를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준비가 완료되
어 있어야 하는 날"이라며 "주민들이 제
도를 몰라 소중한 재산권 행사 기회를 놓
치지 않도록 행정이 먼저 다가가는 적극
행정을 펼쳐달라"고 당부했다.